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최종 합의 내용

2024년 새해 첫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규제인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EU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기업의 공급망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EU CSDDD, 국내 기업에 직간접 영향

지난달 14일 유럽연합(EU)의 이사회와 의회는 CSDDD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형식적 승인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인권과 환경 분야의 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식별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U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 및 Non-EU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EU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 업체까지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CSDDD 제정 배경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급망 인권 관리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유럽 일부 국가*들이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을 시행했고, EU 집행위는 통합적인 실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CSDDD 초안을 2022년 2월 발표했습니다.

EU의 ESG 규제의 뿌리가 되는 'EU 그린 딜*' 또한 CSDDD 제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CSDDD는 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Non-EU 기업에도 공급망 실사 의무를 적용해 보다 폭넓게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영국-현대판 노예방지법('15년), 프랑스-기업경계 의무화법('17년), 네덜란드-아동노동 실사법('22년), 독일-공급망 실사법('23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및 환경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EU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로드맵

EU CSDDD 적용 기업은?

최종 합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CSDDD 적용 대상 기업 (최종 합의안 기준)	
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수: 500명 초과 매출: 글로벌 연 매출 1억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
Non-EU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수: 해당 사항 없음 매출: EU 역내 연 매출 1억5천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

*EU 집행위가 지침 적용 대상인 Non-EU 기업 리스트 공개 예정

출처: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deal to protect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주요 쟁점 사항은?

지난 2년간 CSDDD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공급망 범위, 기후변화 관련 조항, 그리고 실사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 등이었습니다. 실사법을 강력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유럽의회와 규제 완화에 집중한 EU 이사회 간 오랜 협의 끝에 정리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U 집행위가 제출한 초안에서는 기업 가치사슬 내 전체 공급망을 실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면, 최종 합의 내용에서는 업스트림(Upstream)과 일부 다운스트림 활동(유통 또는 재활용)만을 공급망 실사 범위로 정했습니다.

또한, 동 지침에 적용 받는 기업들이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사 의무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도 기관 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최종 합의를 통해 금융업은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EU이사회는 향후 영향 평가를 통해 금융업도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EU CSDDD 대상 기업은 자사와 직·간접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의무 사항	
실사 의무 관련 기업 정책 수립	•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정책 수립
부정적인 영향 식별	• 자사 및 공급망 전체에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예: 예방 조치 계획 마련 등)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 조치	•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행
고충 처리 절차 마련	• 인권과 환경 관련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공급망 내 모든 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모니터링	•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완화, 해결 또는 최소화됐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정기적 평가 수행
정보 공개	•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출처: PwC, Corporate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 - A focus on your entire value chain

위반시 제재는 어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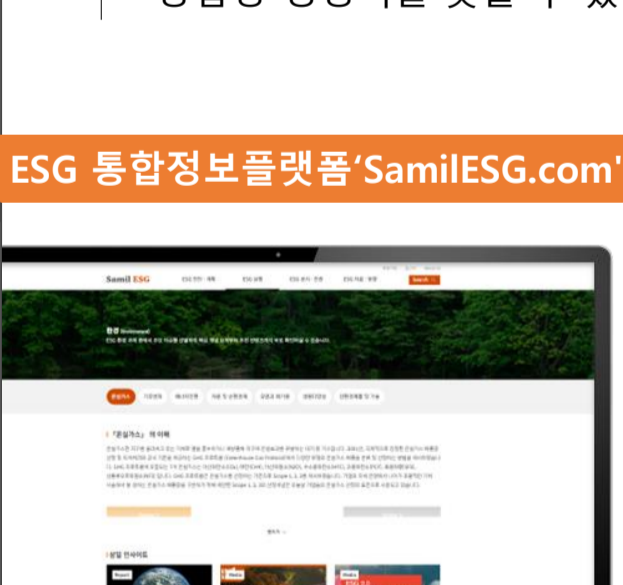
위반 시 제재 수준은 EU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제재 범위에는 기업 순매출의 5% 수준의 벌금 등 금전적 제재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경 및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사에는 거래 중단 등 비금전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선제 대응으로 공급망 경쟁력 확보해야

최종 합의 내용의 구체화 및 추가 기술 회의를 통해 CSDDD 최종 문서가 완성되고, 해당 문서에 대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 문서가 EU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U회원국은 18개월 내에 EU CSDDD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하고, 국내법 전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U CSDDD는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이지만 규제에 선제 대응한다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SG 통합정보플랫폼 'SamilESG.com'



'Samil ESG'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최신 ESG 정보·트렌드를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입니다. 삼일PwC ESG플랫폼에서 업선한 'Samil ESG'의 모든 정보와 자료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Samil ESG 사이트](#)

ESG 주요 기사

- [EU, 이달 외국 철강사 탄소배출량 첫 접수...산업부,韓기업 대응 점검](#), 이데일리, 2024.1.16
- [기후문제, 경제학으로 풀어야](#), 매일경제, 2023.1.7
- ['탄소 감축 설비' 갖춘 기업 1200억 받는다](#), 한국경제, 2024.1.7
- [기후변화 대응 녹색금융에 31조 투·융자...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뉴스1, 2024.1.4

- [과기정통부, 160개 조항 담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머니투데이, 2023.12.26

- [행동주의 투자자들 지배구조 공격, 지난해 사상최대...속전속결이 대세](#), 파이낸셜뉴스, 2024.1.7

Contacts

권미엽 ESG Platform Assurance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이혜민 ESG Platform Tax Partner
hye-min.lee@pwc.com
 +82-2-3781-1732

윤영창 ESG Platform Consulting Partner
yungchang.yun@pwc.com
 +82-2-709-3354

하미혜 거버넌스센터 Managing Director
mihye.ha@pwc.com
 +82-2-709-8599

곽윤구 ESG Platform Deal Partner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pwc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